

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◆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?

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, **2026년에** 만 15-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**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**의 인건비를 지원

◆ 문의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(T. 031-8014-5462,5482 / E-mail. notice@gyef.or.kr)

■ 지원대상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)

1. 수원, 용인, 화성 소재

2. 기준 피보험자 수* 5인 이상** 우선지원 대상기업

*기준 피보험자 수 :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
**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,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(별첨1~6,8 참고)

3. 연 매출액이 '기준 피보험자 수×1,900만원' 이상인 기업

※ 업력 1년 미만 사업장,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,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

■ 지원요건

1. 만 15-34세*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

*군필자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

■ 취업애로청년 :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

① 4개월 이상 실업

-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

② 고졸 이하 학력(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)

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

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

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
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

⑦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

⑧ 북한이탈청년

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

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(또는 대학 졸업예정자)

-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

※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(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)

2. 근로조건

○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

(단,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)

○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○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**28시간** 이상인 자

○ (임금수준)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, **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**

※**1회차 지원금 산정기간(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 6개월)** 동안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,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, 상여금 등 모든 임금성 금액을 포함한 **급여 지급 총액이 2,700만원 이하**여야 함

※지원 제외 대상 청년

- ①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: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,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프리랜서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,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
- ② 사업주(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,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등
- ③ 외국인 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
-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자
 *단,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야간대학,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취업애로요건 1, 3~9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
 *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
- ⑤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
- ⑥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

■ 지원 내용

○ (수도권형)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**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** 지원(월 최대 60만원×12개월)

- **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* 이상**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

*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- 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

신청 시기	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			계
	6개월 후	9개월 후	12개월 후	
지원 금액	<1회차> 360만원	<2회차> 180만원	<3회차> 180만원	최대 720만원

- 참여 청년이 6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, 정규직 채용(전환)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

예) 10개월 10일 근로 시 → 1회차 지원금 360만원(6개월분), 2회차 지원금 180만원(3개월)은 전액 지급, <3회차> 지원금은 60만원(1개월분)만 지급

■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

○ 모집 기간 : 연중 모집 ※예산 소진 시,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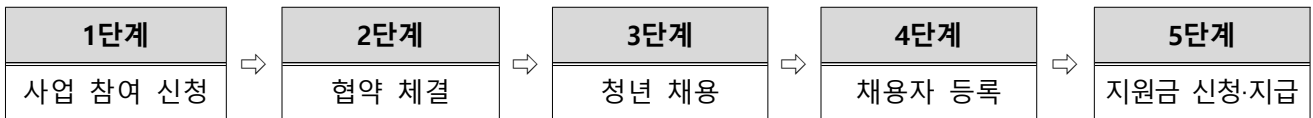
○ 참여 신청 방법 : 고용24 누리집 www.work24.go.kr

▶ 기업회원 로그인 ▶ 마이페이지 ▶ 참여사업관리-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▶ 참여신청관리
▶ 2026년 사업참여신청 ▶ 운영기관 검색 ▶ **'(사)경기경영자총협회'** 검색·선택 ▶ 신청하기

○ 참여 신청 제출 서류

- ① 사업주 확인서 (서식1-1)
- ② 추가 약정사항 확인서(기업용)(서식2-1)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(서식3)
-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서식4)
- ⑤ 사업자등록증
-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면세사업자의 경우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)
 - 2024년, 2025년 중 1개년도(1.1~12.31)
 - 업력 1년 미만 사업장,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,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
- ⑦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

○ 지원 절차



■ 유의사항

○ 인위적감원(고용조정 이직) 등 발생 시 제한조치

※ 고용조정 제한 :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 (고용상실코드 23-1~8번, 26-3번)이 없어야 함

※ 대상 :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

※ 지급 제한

-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
-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(정규직)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,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
-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,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

■ 문의처

○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

○ Tel. 031-8014-5462, 5482 / E-mail. notice@gyef.or.kr

※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 및 해석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」에 따르며, 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